

보도 일시	2023. 2. 27.(월) 16:00 배포 시	배포 일시	2023. 2. 27.(월) 16:0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1361)
		담당자	사무관 이동민 (044-201-1362)

농식품부,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 - 2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규제개선 과제(40개)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의 이행상황을 포함한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철폐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총 40개의 과제가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 ③ 산업 융복합 및 신시장 조성,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분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루쌀 등 중요 하계작물을 포함한 전략작물식물제를 신설하고, 종자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도 여건변화에 맞게 개편한다.

둘째, 농식품 산업에 새로운 자본과 기술(ICT)을 도입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투자 지구에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지원요건 개편, 수출통합조직의 자율성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기술 발전·혁신 속도가 빠른 신산업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둔다. 그린바이오, 푸드테크는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먹이(펫 푸드) 분류·표시 규정 정비, 반려동물사료 수입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인중 차관은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농식품 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방안



농업혁신과 자율 · 창의 중심의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방안

2023. 2. 27.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40건)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3건)

❶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대상에 가루쌀을 포함하여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 ▶ **(현황)**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중요 작물*의 재배 확대가 필요
* (동계) 조식료, 밀, 맥류 등 (하계) **가루쌀**, 콩, 조식료 등
- ▶ **(개선방안)** 동계작물에만 지급하던 논활용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중요 하계작물 재배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작물 재배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2023 예산 반영 및 사업지침 수립·시달, '23.1분기)
- ▶ **(기대효과)**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수입대체 효과

❷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보험금 지급조건 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

- ▶ **(현황)** 가루쌀 재배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내 기타품목에 가루쌀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장내용으로 인해 가입 저조
- ▶ **(개선방안)** 가루쌀 생육시기(이앙적기 등)에 맞춰 판매종료시점을 연장하고, 수확불능 및 경작불능 관련 보험금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23.2분기)
- ▶ **(기대효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보험수요 충족 및 농업경영 리스크 감소

❸ 종자업 등록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자산업 활성화 도모

- ▶ **(현황)** 종자 생산·판매 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존재
- ▶ **(개선방안)**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23.4분기)하여 작물 종류별로 종자의 육성·증식·가공 등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 마련
- ▶ **(기대효과)** 종자업체들의 편의성 제고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8건)

①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 **(현황)**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설립 및 경영 참여 제한
 - *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출자액 90%까지 완화되었으나 설립주체는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로 제한
 -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외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농업인의 참여 제한
- ▶ **(개선방안)**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및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4분기)
 -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에 참여하도록 개정
 -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농업법인 정관례(고시) 개정
- ▶ **(기대효과)**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업계 외부의 자본력, 기술력 도입 촉진

②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등 도매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가칭)」 제정

- ▶ **(현황)**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 정착
 - * 개설구역 이외에서나 제3자의 판매가 제한되어 경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혼잡 등 문제 발생 → 농산물의 품질저하 및 유통비용 증가
- ▶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여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범위의 전국단위 확대를 통한 도매유통 혁신 추진(23.4분기)
 - * 농산물 온라인 도매 플랫폼 구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등
- ▶ **(기대효과)** 도매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거래·물류 효율화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③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

- ▶ **(현황)**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나, '선별·포장·가공·저장·수출입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경영이 가능
 - *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상품화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확대 요구
- ▶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24.4분기)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출하자·구매자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경영사업 유형화 및 확대
 - (출하자 지원) 종자 개발, 농업인 교육, 포장재 지원 등, (구매자 지원) 물류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소포장·상품화 지원 등
- ▶ **(기대효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소득 향상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안정화 도모

④ 「산업집적법」 상 ‘첨단투자지구’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

- ▶ **(현황)**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제약
- ▶ **(개선방안)**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 산업시설 기준에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는 「초지법 시행령」 개정(‘23.2분기)
- ▶ **(기대효과)** 초지법상 부담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

⑤ 무농약원료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 ▶ **(현황)**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은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나,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은 일반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 ①무농약농산물(50% 이상), ②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③유기식품, ④첨가물·가공보조제(5% 이내)
- ▶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무농약원료 가공식품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23.2분기)
- ▶ **(기대효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⑥ 수출통합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출자제한 규정 완화

- ▶ **(현황)**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참여하나, 수출업체의 출자 한도 및 의결권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의견 반영에 한계
- ▶ **(개선방안)** 수출업체도 통합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출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제한 규정 완화(‘23.1분기)
- ▶ **(기대효과)** 수출업체의 추가 지분참여에 따른 의결권 확대로 수출통합조직의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도모

⑦ 수출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한도 등을 완화하여 수출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편의성 제고

- ▶ **(현황)** 국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격제한, 지원한도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출업체 애로
- * 수출입 실적,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시기(1~4월), 재무제표 등 공통제출 서류 등 부담
- ▶ **(개선방안)** 수출업체의 역량,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 지원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추진계획 개선(‘23.1분기)
- ▶ **(기대효과)** 수출업계 현장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⑧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요가 높은 식음료·물류시설 용지비율 확대로 잔여용지 활용도 제고

- ▶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물류업과 식음료제조업은 분양율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있음

* 분양현황('22.6월, 71.8%) : 물류 100%, 식음료 96, 연관업종 48, 음료 14 등

- ▶ **(개선방안)** 연관업종 및 음료제조 용지를 축소하고 식음료·물류 시설 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개정 고시 완료

- ▶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잔여부지의 입주활성화(현 분양율 72.4%)

* 건식무역, 제이드 시스템 투자유치, ㈜팔도, 서주제과 등 중견기업들 투자의향

③ 산업 융복합 및 新시장 조성(5건)

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농식품 그린바이오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

- ▶ **(개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시장으로 대두

* (주요 분야)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 포함

- ▶ **(개선방안)**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정책 등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산업화 촉진)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를 '27년까지 1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주요 분야를 거점으로 기업의 상품화 지원

- (기술·인력) 디지털 육종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확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생태계 조성)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23.4분기)

- ▶ **(기대효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수출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에 기여

②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기후·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푸드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 **(현황)**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2.12월)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 **(개선방안)** 푸드테크의 정의·범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지원 근거,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인증(또는 지정), 혁신 특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23.4분기)

- ▶ **(기대효과)**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으로 新식품 및 관련 장비 수출 확대,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 확보

③ 가축(기타동물)에 포함되는 곤충 범위 확대(14종→16)로 곤충산업 육성

- ▶ **(현황)** 「축산법」 상 곤충(14종*)은 '19년 고시 개정을 통해 가축(기타동물)에 편입되었으나 대부분 식용, 학습용 곤충으로 지정되어 사료용 곤충은 2종에 불과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 **(개선방안)**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중 곤충 범위에 아메리카 동애등에, 벼 메뚜기를 포함되도록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고시 개정('23.2분기)
- ▶ **(기대효과)** 사료용 곤충기업 양성 및 농가 소득 증대로 곤충산업 성장에 기여
 * 곤충사육농가에 취득세·지방소득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혜택 부여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 생산품과 OEM 생산품의 판매 및 입주기업의 커피 등 음료제품 판매 허용

- ▶ **(현황)** 산업단지 내 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부대시설 내 제품 판매장)가 가능하므로 OEM 생산 제품을 묶어(혼합)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밖 별도 사무실에서 판매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 **(개선방안)** 산업단지 내 OEM 제조 조건*을 충족할 경우 OEM 생산 제품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23.1분기)를 통한 규정 명확화 추진
 * ① 생산제품 입주업체 직접기획, ② 입주업체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입주업체 명의로 제조, ④ 입주업체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 ▶ **(기대효과)** 별도 사무실 운영비, 물류비 등 추가 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 ▶ **(현황)** 커피(원두) 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 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시음 외에는 유료판매가 불가
 - ▶ **(개선방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여 비알콜 음료(커피 등) 판매 허용('23.1분기)
 - ▶ **(기대효과)** 클러스터 내 자체 생산품과 함께 다양한 음료 판매를 허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식품 문화·관광·체험·홍보 등이 융합된 식품 문화복합공간 창출로 산단 및 지역 활성화

⑤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자 이외에 전문공사 업체(금속·창호·온실시공업 등)도 임대형스마트팜 시공에 참여 허용

- ▶ **(현황)**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장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온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건설업으로 제한 발주
 * 현장에서는 공종별 전문업체에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절한 단가책정 및 품질확보에 유리하다는 의견
- ▶ **(개선방안)** 조성업체 선정 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창호·온실공사업)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
- ▶ **(기대효과)** 스마트팜 온실공사 시설 사양 제고 및 품질 확보에 기여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10건)

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한기 활용 농외 근로 허용

- ▶ **(현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구입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
- ▶ **(개선방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23.1분기)
- ▶ **(기대효과)** 귀농인의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② 지역농협 복수조합원 대상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추가하여 실질적 영농 종사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

- ▶ **(현황)**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고시)」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가입 불가
- ▶ **(개선방안)** 농촌 고령화를 감안,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자'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23.1분기)
-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

③ 농촌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융자 요건 개선

- ▶ **(현황)** 매년 약 6천 세대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은 상황
- ▶ **(개선방안)** 농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시 청년은 기준 금리에 비해 인하된 금리(2%→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정('23.1분기)
- ▶ **(기대효과)**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인력의 정착 지원에 기여

④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복수의 소규모 농장 운영 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 ▶ **(현황)**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 횟수를 농업인·법인당 1회로 제한
* 국비지원 시 농업인·법인당 보험료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개선방안)**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상 지방비 1회 지원 기준 삭제('23.1분기)
- ▶ **(기대효과)** 복수의 소규모 농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가입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의 형평성 제고 및 재해보장 강화

⑤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

- ▶ **(현황)**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은 원료 농축산물을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원료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시에도 인증취소까지 가능
- ▶ **(개선방안)** 비의도적인 이유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23.2분기)
 - * (현행) 1차 및 2차 위반: 시정조치, 3차: 인증취소 → (개정) 시정조치(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1차에 인증취소 처분)
- ▶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⑥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선

- ▶ **(현황)**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상 현실화 요구 지속
- ▶ **(개선방안)** 방역기준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및 최소 지급비율(20%) 설정, 예방 살처분 농가에 유리한 보상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23.2분기)
- ▶ **(기대효과)**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유도

⑦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의 국고 보조율 상향(20% → 25)

- ▶ **(현황)**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분야는 유가상승에 민감하며, 평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면세유가 시설농가에 부담으로 작용
- ▶ **(개선방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율을 25%로 상향 조정(23.1분기)
- ▶ **(기대효과)**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

⑧ 고령·은퇴농의 과원 활용을 위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자격을 임대차 과원까지 확대

- ▶ **(현황)**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과원) 소유 또는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농협·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자격 제한
- ▶ **(개선방안)** 경영주가 임대를 희망하거나 방치된 과원을 임차하여 꽃가루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대상에 임대차 과원 포함
- ▶ **(기대효과)** 사업 수요 확대, 신뢰할 수 있는 국산 꽃가루 공급에 기여

⑨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

- ▶ **(현황)**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요구하여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은 해당 자금 활용 곤란
* 신규사업자는 시설자금이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없는 신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
- ▶ **(개선방안)**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23.1분기)
- ▶ **(기대효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기회 부여

⑩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

- ▶ **(현황)** 지역주민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관련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서비스 제공 단절 및 서비스 질 저하 발생
- ▶ **(개선방안)**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23.4분기)
- ▶ **(기대효과)** 지역 서비스공동체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서비스 지속 지원 가능

⑤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5건)

① 농촌 주택 특성,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후불량주택 개량 비용 및 농촌집고쳐주기사업의 지원단가 현실화

- ▶ **(현황)**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보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을 지원 중이나, 주택정비 단가가 급등하여 자부담 비용 상승 및 사업 포기 증가
- ▶ **(개선방안)** 건설시장 동향을 반영한 사업단가 현실화 추진('23.2분기)
* (슬레이트지붕 개량) 0.9천만원 → 1.1천만원, (집수리) 0.8천만원 → 1천만원
- ▶ **(기대효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집수리 등 주택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 ▶ **(현황)** 집고쳐주기사업의 경우 중보수 이상(육실, 주방 등) 집수리 요구가 많으나, 공사비 지원 부족으로 수혜자 맞춤형 지원 미흡
- ▶ **(개선방안)** 농촌 취약계층의 중보수 이상 집수리 요구와 농촌주택 특성, 건축 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평균 지원단가 상향(500만원→650, '23.1분기)
- ▶ **(기대효과)**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②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소규모 캠핑업(야영장업) 허용

- ▶ **(현황)** 체험마을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입지·편의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등으로 야영장업 등록이 어려움
- ▶ **(개선방안)** 체험휴양마을 체험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개선 협의(문체부, '23.4분기)
- ▶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체험휴양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광 상품과 결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소비자 중심의 펫푸드 분류·표시 제도 정비방안 마련

- ▶ **(현황)** 펫푸드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료관리법상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분류·관리 체계로는 수요 대응에 역부족
- ▶ **(개선방안)** 원료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소비 중심의 용도별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펫푸드 표시·광고 규정 보완('23.4분기)
 - * 소비자의 이해가 쉬운 원료 명칭으로 개정, 원료의 함량 표시 등
- ▶ **(기대효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펫푸드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

④ 반려동물사료 수입 시 벌크 수입이 가능하도록 포장 상태 범위 확대

- ▶ **(현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위험 국가(36개국)산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쇠고기 등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 포장' 상태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 **(개선방안)** 수출국이 검역증명서를 통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미포함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벌크포장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23.4분기)
- ▶ **(기대효과)** 수입업체 현장애로 해소 및 수입업체 비용 경감(약 80% 이상)*
 - * 벌크포장 수입단가 1~3 \$ /kg, 소포장 수입단가 8~14 \$ /kg

⑤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및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 ▶ **(현황)**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
- ▶ **(개선방안)**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23.3분기)
- ▶ **(기대효과)**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 제고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등 보장

⑥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9건)

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절차 개선

- ▶ **(현황)**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가입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관련 업무 과중으로 불완전계약 등 문제 발생
- ▶ **(개선방안)** 정책보험사업자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 시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고, 계약인수 시 목적물(농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검증모델 활용 검증으로 대체(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 추진, '23.4분기)
- ▶ **(기대효과)**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관련 업무 효율화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청, 도시농업관리사 신규발급 절차 등 간소화

- ▶ **(현황)**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가 많아 식품기업의 문서작성 부담이 높고, 타사업 지원 시에도 중복제출서류 존재
- ▶ **(개선방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23.4분기)
- ▶ **(기대효과)** 식품기업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 효율화

- ▶ **(현황)** 도시농업관리사(국가자격증) 신규 발급 시 관련 서류(도시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 사진)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 ▶ **(개선방안)**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 ▶ **(기대효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③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 ▶ **(현황)** 현재 농산물이력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세부규정 등이 미비하여 활용 불가
- ▶ **(개선방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3.4분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농산물의 이력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 (정보공개 대상) 공개에 동의한 자, (공개범위)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공개방식) 농산물우수 관리시스템 및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 ▶ **(기대효과)** 이력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생산·유통·판매자의 경영안정에 기여

④ 농가가 비의도적인 농약오염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심사 요건 구체화

- ▶ **(현황)**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인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 발생
- ▶ **(개선방안)**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23.2분기)
- ▶ **(기대효과)** 친환경 인증 농가의 구제 절차 강화 및 인증의 객관성 확보

⑤ 매립지(간척지) 등 매각대금 납부 시, 일시납부 외에 분할납부 허용

- ▶ **(현황)**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대상 자격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납부 하도록 규정
- ▶ **(개선방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23.2분기)하여 매립지 등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 **(기대효과)**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매립지 매입자(지자체 등)의 재정부담 경감

⑥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도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 **(현황)** 매립지 등의 임대료는 계약일 90일 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작물 경작,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한해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개선방안)**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 등의 임대료 납부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 대상에 추가(시행규칙 개정, '23.2분기)
- ▶ **(기대효과)** 관련 사업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⑦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을 양파 육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 **(현황)** 8월 중순~11월 상순 동안 양파 정식을 위한 육묘를 실시하나, 농업인이 육묘 용도로 활용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움
- ▶ **(개선방안)** 고추 수확 종료 후 양파 육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의 사용범위 확대
- ▶ **(기대효과)** 고추 및 양파 재배 농업인의 편의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

⑧ 재해보험 현장 확인·심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의 제한 해제

- ▶ **(현황)** 손해사정사(손해평가 업무, 보험가입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및 손해평가사(손해평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상이
- ▶ **(개선방안)**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손해평가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23.4분기)
- ▶ **(기대효과)** 보험가입 농지 현장 확인·심사 투입인력을 확대하여 보험 운영의 안정성 및 정확성 제고

⑨ 축산관련종사자의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불편 해소

- ▶ **(현황)** 기존 축산업 허가자가 새로 확보한 축사에 축산업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축산업 신규허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여 불편 초래
- ▶ **(개선방안)** 이미 축산업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산업 신규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교육을 면제(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 ▶ **(기대효과)** 축산농가에 불필요한 추가교육 이수 의무를 면제하여 불편 해소

참 고

과제별 담당자

과제명	실국·담당과	담당 과장	담당자
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3건)			
1. 전략작물 대상에 가루쌀을 포함하여「전략작물직불제」도입	식량정책관실 가루쌀산업육성반	안유영 과장 044-201-2911	한태희 사무관 044-201-2915
2.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등 완화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박나영 과장 044-201-1791	이현경 사무관 044-201-1728
3. 종사업 등록 시설·장비 기준 완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문태섭 과장 044-201-1891	안치홍 사무관 044-201-2479
② 농식품 투자 및 수출 활성화(8건)			
1.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남현수 과장 044-201-1531	왕희대 사무관 044-201-1537
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등 도매유통 혁신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홍인기 과장 044-201-2211	남현중 사무관 044-201-2215
3.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	홍인기 과장 044-201-2211	곽병배 사무관 044-201-2221
4. '첨단투자지구'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추가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 044-201-2351	백재관 사무관 044-201-2352
5. 무농약원료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비인증원료 허용범위 완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주원철 과장 044-201-2431	최규일 사무관 044-201-2437
6. 수출통합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출자제한 규정 완화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	이용직 과장 044-201-2171	박영완 사무관 044-201-2176
7. 수출지원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편의성 제고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	이용직 과장 044-201-2171	김현우 서기관 044-201-2172
8.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음료·물류시설 용지비율 확대	식품산업정책관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노영호 과장 044-201-2181	정찬민 사무관 044-201-2187
③ 산업 융복합 및 新시장 조성(5건)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 제정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김기연 과장 044-201-2131	유대열 서기관 044-201-2137
2.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강혜영 과장 044-201-2111	박성용 사무관 044-201-2126
2.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 종류 확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김기연 과장 044-201-2131	윤재돈 사무관 044-201-2472
3. 국가식품클러스터 OEM 생산품의 혼합 판매 및 음료제품 판매 허용	식품산업정책관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노영호 과장 044-201-2181	정찬민 사무관 044-201-2187
4. 전문공사업체도 임대형스마트팜 시공에 참여 허용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서준한 과장 044-201-2411	이강권 사무관 044-201-2423
④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10건)			
1.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한기 활용 농외 근로 허용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	남현수 과장 044-201-1531	정성문 사무관 044-201-1539
2. 지역농협 복수조합원 대상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추가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	강동윤 과장 044-201-1751	이동기 사무관 044-201-1754
3.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융자 요건 개선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하경희 과장 044-201-1551	성순아 사무관 044-201-1559

과제명	실국·담당과	담당 과장	담당자
4.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 횟수 제한 해제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박나영 과장 044-201-1791	김민주 사무관 044-201-1727
5.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주원철 과장 044-201-2431	최규일 사무관 044-201-2437
6.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선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유재형 과장 044-201-2531	안영창 사무관 044-201-2541
7. 시설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의 국고 보조율 상향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김호균 과장 044-201-2251	김승동 서기관 044-201-2256
8.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자격을 임대차 과원까지 확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	김호균 과장 044-201-2251	장미 사무관 044-201-2254
9. 관광농원 개발 신규농업법인을 위해 조건부 자금지원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최정미 과장 044-201-1581	이영은 사무관 044-201-1590
10.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용도 추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최봉순 과장 044-201-1571	김화태 사무관 044-201-1572

[5] 쾌적한 농촌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5건)

1. 노후불량주택개량비용 및 농촌 집고쳐주기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	하경희 과장 044-201-1551	한우리 사무관(1554) 성순아 사무관(1559)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소규모 캠핑업(야영장업) 허용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최정미 과장 044-201-1581	장미진 사무관 044-201-1592
3. 펫푸드 분류·표시 제도 정비방안 마련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세진 과장 044-201-2651	박찬우 사무관 044-201-2656
4. 반려동물사료 수입 시 벌크 수입 가능하도록 포장 범위 확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	박경희 과장 044-201-2071	이재명 사무관 044-201-2075
5.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세진 과장 044-201-2651	김준걸 서기관 044-201-2652

[6] 생산자·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9건)

1. 농작물·가축재해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박나영 과장 044-201-1791	이현경 사무관 044-201-1728
2.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신청절차 간소화	과학기술정책과 식품외식산업과	이연숙 과장(2451) 문지인 과장(2151)	이진희 사무관(2460) 최영조 사무관(2170)
3. 농산물이력추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송지숙 과장 044-201-2971	김기성 사무관 044-201-2276
4. 비의도적인 농약오염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심사 요건 구체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친환경농업과	주원철 과장 044-201-2431	최규일 사무관 044-201-2437
5. 매립지(간척지) 등 매각대금 납부 시 분할납부 허용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이재천 과장 044-201-1851	박재영 사무관 044-201-1860
6.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개선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이재천 과장 044-201-1851	박재영 사무관 044-201-1860
7.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용도 확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유원상 과장 044-201-2231	이남윤 서기관 044-201-2236
8.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의 제한 해제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박나영 과장 044-201-1791	박혜민 사무관 044-201-1792
9. 축산관련종사자의 교육방식 개선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이정삼 과장 044-201-2311	박천복 사무관 044-201-2329